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6. 18.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5. 24.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4. 5. 28.

다. 상정일자: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2024. 6. 17.)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재산세과장 김흥순】

가. 제안이유

여성가족부는 생활체감형 정책(법령 및 조례의 성차별적 용어 개선)에 대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지자체 등에 개선 권고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에서 성차별적 용어인 “미망인”을 “사망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로 용어 변경(안 제13조제2항)

3. 검토보고(전문위원 권하나)

- 동 조례 개정안은 2024년 5월 2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여성가족부의 「20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¹⁾」에 따라 우리구 구세 감면 조례 내 성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 안 제13조제2항의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 중 “미망인”을 “사망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로 수정하는 것임.
- 여성가족부의 「20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통보서」에 따르면 “미망인”이란 아직 남편을 따라 죽지 못한 사람으로 여성만을 가리키는 표현일 뿐 아니라, 여성을 남성의 부수적인 존재로 여기는 표현임²⁾.

- 1) 제11조(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책, 사업(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17. 3. 21., 2018. 3. 27.>
-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개선 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및 의견 표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17. 3. 21.>
- ③ 제2항에 따라 정책 등의 개선 계획을 제출한 기관의 장은 개선 조치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 권고, 의견 표명,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제출 및 개선 조치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0., 2017. 3. 21.>
- 2) **생활체감형 정책_법령 및 조례의 성차별적 용어 개선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6191호 (2022.12.8.)**

- 지자체 조례 내 성차별적 용어 정비

구분	성차별적 용어	개선방향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용어	여성발전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전면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개선
	여성주간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정비
가족 관련 용어	호적	‘호적’ 용어를 ‘가족관계등록’으로 수정·정비
	호적등본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로 수정·정비
	본적	‘본적’ 용어를 삭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외 동일인의 식별이나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록기준지’로 수정·정비
	편부·편모	‘편부·편모’를 ‘한부모’로 용어 순화·정비
성차별적 용어	미망인	‘미망인’ 용어를 ‘사별한 배우자’, 또는 의미 전달이 가능한 경우 ‘배우자’로 표기, 또는 법령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비(예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단, 고유단체명에 포함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외
	총각	‘총각’ 용어 삭제 또는 ‘미혼남성’으로 개선
	윤락	‘윤락’을 ‘성매매’ 용어로 수정 개선

- 따라서,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개선의 권고가 있었던 성차별적 용어를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